

공
의

기안용지

분류기호 432.4
문서번호

(전화번호 342)

전결규정 조 호
전결사항

처리기한	기안자	결	제1안
시행일자	구획정리과	제2안	제1안
보존년한	1969. 5. 21	기안일자	69. 5. 9.
보	도시계획국장	구획정리과장	도시계획계장
	구획정리과장		
	도시계획계장		
협조	환지계장	도시계획과장	행정과장
경수참	유신	각안참조	발
제	목	중곡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인가 신청기간 변경지정	
제 1 안 내부결재			
1. 성동구 중곡동, 군자동, 구이동, 능동, 지역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 연장 지점이 요청되었기 건설부장관에 진달 하였으나 별첨 공문 및 공고문과 같이 인가 신청기간이 연기 되었기,			
2. 관할 토지소유자들에게 주지 시키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			
제 2 안			
공고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119 호			

496 167 P 3-1

서울특별시 59

별첨 공고문과 같이 귀 사업부 관내 성동구 근자동, 구이동, 농동, 중곡동
과 일부 지역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10조의 구정에 의하여 인가신청 기간
이 지정되었거 통보하니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주지 시킬것은 물론 게시판등에
정식할지 가지 시킬지
첨부. 공고문 사본 1부. 끝.

제 5 안

수신 성동구 근자동 70의 4 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추진 위원장

제목 동 건 발 신 사 장

귀하께서 당시 경유 건설부 장관에 요청한 중곡토지구획정리사업 인
가 시행기간 변경지정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 ~~과~~ 과 같이 변경지정
되어 당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9조^{제2}항의 구정에 의하여 공고하였거
통보하니 인가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첨부. ~~건설부 공고문 사본 1부.~~

서울시 공고문 사본 1부. 끝.

3-3

4/19